

제820호

무주 공보

2026. 7. 23.(목)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무주군 공고 제2026-812호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 체계를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목재펠릿 할인판매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장의 안정적 운영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 체계를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목재펠릿 할인판매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장의 안정적 운영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심의회 명칭 및 회계관리 규정 등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관리위탁 관련 용어와 위탁 기간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위탁 취소 시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및 제13조)

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목재펠릿 할
인판매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 및 지급 절차를 신설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
- 전자우편 : pbada81@korea.kr
- 팩 스 : 063-320-22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산림녹지과(☎(063)320-2466, 팩스(063)320-22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 조례명 :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조례 제 호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을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무주군”으로, “군 설천면”을 “무주군 설천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영·관리를”을 “운영·관리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격을 군”을 “가격을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으로, “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를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결산·재무회계에 대해서는 「무주군재무회계규칙」”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는 「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위탁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탁운영 할”을 “관리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위탁 운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만료후”를 “만료 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비 지원)”을 “(운영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재의 전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목재펠릿의 보급 확대와 보급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보급농가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목재펠릿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격차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가격차액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가격차액을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관리위탁운영의 취소)”를 “(관리위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위탁운영”을 각각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하여 손실을 보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② “보급농가”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u>군</u>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② ----- <u>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u> ----- -----.
제3조(위치) <u>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u> 목재펠릿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은 <u>군 설천면</u> 소천강변로 138-5에 둔다.	제3조(위치) <u>무주군</u> ----- ----- ----- <u>무주군 설천면</u> ----- -----.
제6조(운영·관리) ① (생략)	제6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공장의 <u>운영·관리</u> 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 <u>운영·관리</u> 를 -----.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① 군수는 생산된 제품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 및 이윤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u>가격</u> 을 <u>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u>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① ----- ----- ----- ----- <u>가격</u> 을 「 <u>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u> 」 제11조에 따른 <u>무주군</u> --- <u>정책심의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 등) ① (생략)	제9조(예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장운영에 필요한 <u>예산·결산·재무회계</u> 에 대해서는 「 <u>무주군</u>	② ----- <u>예산·결산</u> 및 재무회계는 「 <u>무주군 회계관리</u>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관리위탁운영)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에 관한 규칙」-----.

제10조(관리위탁) ① -----

----- 관리위탁할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
----- 만료 후-----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재의 전부 또는 ----.

② 군수는 목재펠릿의 보급 확대와 보급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보급농가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목재펠릿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격차액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가격차액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가격차액을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① -----

----- 관리위탁-----.

1. 2. (현행과 같음)

3. ----- 관리위탁-----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하여 손실을 보상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 - 814호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 임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과 연속성 확보(안 제7조제2항)
- 나. 중복된 임기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우)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 전자우편: reater@korea.kr
- 전화: 063-320-2610
- 팩스: 063-320-2239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조례 제 호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가급적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을 “위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u>가급 적 2년</u>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u>다만,</u> <u>위원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 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② ----- <u>3년</u> -- ----- ----- . <u><단서</u> <u>삭제></u>
제8조(위원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의 구성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군수는 한 위원을 3개의 위 원회에 초과하여 <u>위촉하거나,</u> <u>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u> <u>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u> <u>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u> <u>지 아니한다.</u>	③ ----- ----- <u>위촉</u>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